

의안번호	제 13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7월 일 (제 292 회)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연월일	2010년 7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3
----------	----

발의연월일 : 2010. 7. 12.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구성목적 :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한다.

2. 제안이유

제9대 의회의 개원에 따라 1년씩 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 나.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
- 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

관련법규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56조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출과 개선(改選)) 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 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